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54 호 2016. 3. 3(목)

훈 령

남해군훈령 제308호 남해군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1

고 시

- 제2016 - 1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사항 고시 9
- 제2016 - 1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10
- 제2016 - 1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협의·승인) 사항 고시 의뢰 12

공 고

- 제2016 - 151호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3
- 제2016 - 154호 양식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포기신고 수리사항 공고 22
- 제2016 - 15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23
- 제2016 - 171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24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6, 행정 3046)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08호

남해군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남해군 기록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6년 3월 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남해군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기록관 운영규정” 을 “남해군 기록관 운영 규정” 으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을 “뜻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록물관리시스템” 을 “기록관리시스템”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록물관리 시스템”이란” 을 ““기록관리시스템”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담당” 을 “주관” 으로 한다.

제3조 중 “규정이 정하는 바에” 를 “규정에” 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장으로 하여금” 을 “장에게” 로 한다.

제5조제1항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기록물 편찬·전시·홍보

제7조제2항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하여는” 을 “비전자기록물은” 으로, “관리하도록” 을 “관리” 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3월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를 “5월31일까지 기록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월” 을 “8월” 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이관연기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장에게 기록물이관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서무담당주사가” 를 “서무업무담당팀장이” 로, “관련전공자 또는 기록물평가와 관련하여 지식” 을 “관련 전공자 또는 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로,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를 “실비 변상 조례」에” 로 한다.

제1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심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 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폐기관련사실의 기록 및 보존)” 을 “(기록물 폐기 절차 및 집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모든 기록물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

② 처리과의 장은 기록관장의 기록물 폐기계획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를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을 착오없이 폐기하기 위하여 전문요원의 검토를 거쳐 심의 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 폐기 결정된 기록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기관에 기증되는 폐기기록물의 경 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폐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폐기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업무상의 보안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폐기관련 사실의 기록 및 보존) 폐기결정부터 폐기 집행 등 폐기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은 기록물로 보존해야 하며, 폐기목록과 기록물평가심의회 의 자료는 영 구로 책정하여 관리되도록 한다.

제21조 중 “등 군” 을 “등 기록관과 군” 으로,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소속 부서의” 를 “소속” 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열람실 밖으로의 무단 반출

제30조제2호 본문 중 “30일” 을 “15일” 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3회에 한하 여” 를 “세 차례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대출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고

대출할 수 있다.

제30조제4호 중 “제2호의 규정” 을 “제2호” 로 한다.

제31조제4호 중 “및 대출로 인하여” 를 “및 대출로” 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대출로 인하여” 를 “대출로” 로 한다.

제32조 중 “전대할” 을 “다시 전달하거나 빌려줄” 로 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납해야” 를 “반납하여야”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타부처” 를 “다른 부처” 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연 1회” 를 “매년 한 차례” 로 한다.

제35조 중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이관 연기 신청서

1. 기록물철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생산부서명(처리과기관코드):

일련 번호	기록물철분 류번호	기록물철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장사유

2. 개별관리기록물의 이관을 연기하는 경우

생산부서명(처리과기관코드):

일련 번호	등록번호	제 목	생산연도	이관희망 연 도	연장사유

[별지 제3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제 목		회 차	
일 시		장 소	
참석자	위 원		
	배석자		
회의진행순서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포결내용			
비 고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6 - 1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2일

남 해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피허가자		허 가 번호	면 적 (㎡)	점용장소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남해군 남면 남서대로1179번길 40-109	에머슨 퍼시픽 (주)	2008-11	771.0	남해군 남면 덕월리 307-2지선	유람선 계박장	2015.03.01 2016.02.28 (1년간)	2016.03.01 2017.02.29 (1년간)

남해군 고시 제2016 - 1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대상 시설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역, 관리청이 정하여 관로의 형태·규모 등을 정하여 고시 하는 시설”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남 해 군 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제대상 시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에 관하여 구역 및 관로의 형태·규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구역) 남해군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3조(면제대상행위) 활어 도매·소매점영업(활어 운반 차량 포함)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제5조에 해당하는 면제 대상 구역 또는 면제 대상 관로의 시설을 이용하여 인수·배수하는 행위에 적용 한다.

제4조(면제대상구역) 남해군에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특별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제한구역 범위를 지정하되 이외의 지역은 제한 없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5조(면제대상관로의형태·규모) 면제 대상 관로의 형태·규모는 다음과 같다.

- ① 관로의 형태는 각 호와 같다.
 - 1. 제한없음.
- ② 관로의 규모는 각 호와 같다.
 - 1.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개별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

2.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3.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경우에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부칙

1.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2. 동 고시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대상이 아닌 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3. 남해군 고시 제2008-52호는 폐지한다.

남해군 고시 제2016 - 1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협의·승인)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남 해 군 수

○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사항

피허가자		허 가 번호	면 적 (㎡)	점용장소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 소	성 명					당 초	변 경
남해군 미조면 미조대로 ***	박○숙	2011-11	600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750-1 지선	육상양식장해 수인입관 설치	2011.02.282 016.02.27 (5년)	2016.02.27 2020.02.26 (5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	강○영	2011-4	100	남해군 서면 작장리 1465-5 지선	육상양식장해 수인입관 설치	2011.02.282 016.02.27 (5년)	2016.02.28 2016.10.31 (8개월)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6 - 151호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다.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라.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2항)

마. 그 밖에 조문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 연락처 : 전화055-860-3023, 팩스860-3700, e-mail : missbits@korea.kr

의 견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를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장” 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으로 하고 “구성한다.” 를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를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역사정” 을 “해당 지역사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로 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중 “위촉위원” 을 “위촉직 위원” 으로 하고, “있다” 를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 제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 “인정하면”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 을 “2명과 서기 2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팀장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1조에 따른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 위원중 민원봉사과장, 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p> <p>2.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등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한 사람</p> <p>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p>	<p><u>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구성) ①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p> <p><u>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u></p> <p>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1. -----</p> <p>----- 해당 지역사정 -----</p> <p>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p> <p><삭 제></p> <p>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p>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5. (생략)
- 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신설>

<신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지극한 기밀등을 누설할 때
-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제4조(기능) -----
-----.

- 1. ~ 5. (현행과 같음)
-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

-----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삭제>

<신 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년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그밖에 _____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생략)

-----.

제8조(의견청취) ----- 인
장하면 -----

-----.

제9조(간사와 서기) ① -----
----- 2명과 서기 2명
-----.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팀장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

③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16 - 154호

양식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포기신고 수리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포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남 해 군 수

○ 양식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446호	패류양식 (살포식)	창선 서대	80,000	2016. 2. 23. ~2026. 2. 22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5	남해군수산업협 동조합	대체 개발

○ 어업권 포기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 소	성 명	
남해양식 제381호	패류양식 (투석식)	굴, 바지락	이동 초음	42,000	2012. 9.24 2022. 9.23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5	남해군수산업 협동조합	대체 개발
남해양식 제382호	패류양식 (투석식)	굴, 바지락	이동 석평	90,000	2012. 9.24 2022. 9.23	남해군 미조면 미조로 235	남해군수산업 협동조합	대체 개발

남해군 공고 제2016 - 159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해군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24일

남 해 군 수

1. 사용 개시일 : 2016. 2. 24.
2. 사유 : 상주면 민원발급용 인증기 교체
3. 등록, 폐기 공인명 · 인영

공인명	규격	구분	인영	사용부서
민원사무 상주면장인 전용	2.3cm 정방형	폐기		상주면
	2.0cm 정방형	등록		

남해군 공고 제2016 - 171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지포 온천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공람 및 설명회 개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대지포 온천개발계획
- 사업시행자 : (주)남해온천개발
- 위치 및 규모
 - 위치 :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
 - 면적 : 41,986㎡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16. 3. 3.(목) ~ 2016. 3. 25.(금)
- 공람장소 : 남해군 삼동면사무소

3. 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개 최 일 : 2016. 3. 10(목) 오후 2시
- 개최장소 : 대지포 마을회관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6. 4. 1.(금)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 양식으로 서면제출

5. 기타 자세한 문의는 남해군 도시건축과 (☎055-860-34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